하와이 주 법안

섹션1.섹션711-1110.9 , 하와이 주 법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명명한다

711-1110.9 제1급 사생활의 침해

1. 다음의 행동을 한 이는 급1 사생활 침해 죄를 범한 것이다(합법적 행위 혹은 공공의 의무의 이행이 아닐 경우 ):
2. 고의적으로 혹은 일부러 사적인 장소에 타인(들)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알몸 상태 혹은 성적 접촉을 관찰, 기록, 확대, 방송할 수 있는 기기를

설치, 사용 혹은 둘 모두 하는 자; 혹은

타인의 건강, 안전, 사업, 직업, 경력, 금전적 상황, 명성 혹은 사적 관계를 해 할 목적으로

1. 타인의 건강, 안전, 사업, 직업, 경력, 금전적 상황, 명성 혹은 사적 관계를 해 할 목적으로 섹션712-1210에 정의된 대로의 나체, 혹은 섹션 712-1210에 정의된 대로의 성적 행위 중 에 있는 타인의 식별 가능한 이미지 혹은 비디오를 누설하는 행위를 하는 자.
2. 이 문단은 다음의 이미지 혹은 비디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
3. 공공장소에서의 자발적 누드 혹은 성적 행위
4. 상업거래에의 자발적 참여
5. 본 문단은 타인에 의해 전자 통신망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퍼진 이미지와 비디오에 관해 섹션803-41 에 정의 된 대로의 “전자 통신망 서비스” 혹은 “원격 컴퓨팅 서비스”의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목적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6. 사생활 침해는 c급 경범죄로 분류한다.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판결과 더불어 법원은 본 섹션을 위반하는 기록물의 파괴를 명령 할 수 있다.

섹션2. 본 법안은 본 법안이 효력을 띄기 시작한 날짜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의 의무, 책임,형량,진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섹션3. 폐지될 예외 조항은 괄호/가운데 줄이 그어져 있다. 새로운 예외 조항은밑줄이 쳐져 있다

섹션4. 본 법안은 허가 직후 효력을 띄게 된다.